

대학생활원 이용 안내 (지행관)

대학생활원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용하시는 동안 기숙사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각 동 1층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카드키 이용방법

- 홈페이지- [생활안내] - [기타안내] - [출입문 이용 안내] 확인
 - ※ 카드키로 방 내부 모든 시스템 제어가 가능합니다.
 - ※ 방을 나갈 때 반드시 **카드키 제거 후 퇴실** 바랍니다.

2. 식당 이용 안내 (식사신청자에 한하여 이용)

- 조식식사 07:00~08:00 / 아침식사 07:20~08:50 / 점심식사 12:00~13:30 / 저녁식사 18:00~19:30
- **행림관 출입 가능 시간 : 식사 시간기준 ± 20분 (식사 신청자에 한하여 출입 및 이용 가능)**
- 조식식사 (빵, 우유 / 누룽지 등) - 일요일과 하·동기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 조식식은 아침식사 신청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 (조식식사와 아침식사 중 택 1)
- 하·동기 기간에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 이용 가능

3. 입사방법 : 출입카드 및 기타 대여물품(침대시트)을 안내실(경비실)에서 수령 후 입사 진행

- 침대 커버시트 : 안내실(경비실)에서 대여 및 커버링 필수 (무상으로 대여) ※ 1인실-1인 2개/ 2인실-1인 1개

4.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안내

안내실(경비실)	051-510-8595	시설보수 (카드키발급)	051-510-8594
홈페이지	http://dorm.pusan.ac.kr - [양산캠퍼스]		

※ 카드키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비용 : 10,000원

5. 옷장 이용 방법

- 최초 사용번호 : 0000번
- 비밀번호 변경한 경우 퇴사 전 "0000"번으로 초기화 시킨 후 퇴사하여야합니다.
 - ※ 변경하지 않은 경우 : 퇴사절차 미준수 -3점 부과

6. 흡연구역 (행림관 흡연구역 이용가능) : 지정 흡연구역 외 대학생활원 전 구역 금연

흡연 가능 구역
- 후문(부출입구) 앞 쉼터 (지행관)
- A동 농구장 옆 파고라 (행림관)

7. 대학생활원 내부 금지사항

- 생활원 홈페이지(dorm.pusan.ac.kr) - 「원생수칙」 참조
- ※ 유사시 경찰 인력 동원 가능

8. 시설 안내

- 지행관 출입문 Open 시간 : C동-D동 06:00~09:30, 16:00~20:00 / 주·부출입구 24시간 Open
- 체력단련실 : 무료 이용 (06:00~24:00)
- 정보프라자 & 정독실 : 컴퓨터 무료사용, 무인출력기(출력, 복사, 스캔 등) 사용 가능
- 빨래방&다리미방 : 세탁기 및 건조기 비치 (1회당 각 1,000원) (06:00~24:00)
- 각 층별 정수기 및 전자렌지 비치
- 각 층별 공용냉장고 비치 (공용냉장고용 박스 제공 : 1인실 - 1인 2개 / 2인실 - 1인 1개)

9. 화재 예방 관련

-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 금지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및 관련 배터리 일체(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반입 금지**
- **각종 전기기기 및 전열기(전기장판, 고데기, 전기포트, 버너 등) 무단 사용 금지**
 - ※ 사용가능 : 컴퓨터, 프린터, 스탠드, 선풍기, 미니청소기, 드라이기
 - ※ 미사용 시에는 반드시 콘센트 플러그를 뽑아둘 것

10. 외부인 출입 제한

- 입사를 허가받은 자 이외 모든 외부인의 건물 출입 금지

11. 공동생활 질서 유지

- 거주하는 원생실 상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 유지**
- 절도 · 폭행 · 원내 음주 · **주류소지** · 타인명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금지
- 원생실 임의 변경 · **이성 거주 영역 출입** · **원생실에 이성 동반** 금지
- 소란 · 소음(식당포함) · 타인의 생활 방해 · 애완동물 사육 · 공동생활 부적격 행위 금지
- 원내에서 음식 섭취 후 처리가 불량한 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혼합 등)
- 소등하지 않거나 PC와 냉, 난방기를 켜놓고 외출 금지
- **기물과 시설물** 및 공용물품의 손상 · 파괴 · 분해 · 임의 개조 · **무단 위치 변경** 금지

지행관 이용시 당부사항

- 1. 욕실 하수구 이물질 제거** : 욕실바닥 하수구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막혀 일부 원생실 천장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수구 이물질을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시설보수 신청** : 『시설보수』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입사자가 외출중인 방은 수리를 위한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분실위험)
(예외) 입사자가 출입 허용 시, 에어컨, 도어락 등 업체방문 시 시설 직원 동행하여 수리 진행
- 3. 각 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유무선 공유기의 전원케이블선 단자 및 메인인터넷선 단자의 조작을 금지합니다.** : 시설안내 - WiFi Guide - [지행관] 유무선 공유기 이용방법 안내 참조
- 4. 층간소음 발생 방지를 위해 실내화를 생활화** 합시다.
- 5. 지행관은 금연건물입니다. 원생실, 화장실, 발코니 모두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은 지정된 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고, 담배꽂초는 꼭 휴지통에 버려주시시오.
- 6. 퇴사당일 원생실 정리 후** 입사시 대여받은 물품을 안내실(경비실)에 반납하고, 청소 점검 및 퇴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준수 시 벌점 부과)

대학생활원 양산캠퍼스 분원

[별점기준표 양산캠퍼스]

항 목	별 점
1. 무단 거주한 자(원생, 비원생 동일별점 적용) 2. 화재를 일으킨 자 3. 대리로 입사(명의 제공 포함)한 자 4. 생활원 허가없이 이성동반 생활관 출입 또는 이성거주 생활관에 출입한 자(비원생도 동일별점 적용) 5. 심인성 질환 등으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시도한 자 ※ 생활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6. 대학생활원 분원장의 판단 하에 즉시 강제퇴사 조치가 필요한 자	10점 (퇴사)
7. 절도, 폭행, 음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 8.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한 자(옥상 포함) 9. 생활원 내 동물 반입 10. 화재발생이 가능한 행위를 저지른 자	7~10점
11.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12. 비상문 또는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는 자 13. 생활원 건물 내 비원생을 동반하여 출입하거나 비원생 및 타 호실 원생에게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한 자 (비원생도 동일 별점 적용) 14. 생활원 출입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15. 기물과 시설물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해와 임의 개조 등을 행한 자 16. 원생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무단 취식한 자 17. 생활원 관계자에게 불손한 언행(전화와 인터넷 포함)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18. (등록여부 상관없이) 고대기를 콘센트에 꽂은 상태로 방치한 자	5점
19. 원내에서 음주, 주류소지, 도박 등의 행위를 한 자 20. (지도교수 등 직원 포함) 생활원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 22. 소란이나 소음(악기연주,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자 23. 원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자([별표 3] 참고)	4점
24. 건물 외의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한 자 25. 생활원의 허가없이 원생실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사용한 자(원생 간 합의 시에도 불가) 26. 입퇴사 절차 미 준수 자(서류 미제출, 입·퇴사일자 위반, 출입카드 및 기타 물품 미반납, 원실 정리 정돈 불량, 청소 점검 절차 미준수 등) ※ 두 가지 이상 미준수 시 추가 적발 건수 당 별점 1점씩 부과 27. 방 이동 절차 미 준수 자(방이동 일자, 원실 정리정돈, 출입카드 반납, 방이동 후 기존 호실 출입 등) 28.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문을 여는 자(출입에 도움을 준 자 포함) 29. 생활원 허가 없이 본인이 생활하지 않는 타관 출입자(식당이용자는 식당이용시간에 출입가능공간만 허용) 30. 원생실 점검 무단불참자	3점
31.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미수강한 자(정규학기마다 수강 필수) 32. 원실 내 벽지 및 시설물(가구, 현관문 등)을 훼손한 자(못질, 스티커·벽걸이 등 부착) 33. 공동생활 부적격 행위자 [룸메이트 수면 방해, 정독실 자리 독점, 공용냉장고 사용 수칙 위반(지행관), 공용공간(정독실, 자치회의실, 회의실 등) 이용 수칙 위반 등] 34. 밤 12시 이후에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를 사용한 자 35. 낙서 및 광고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자 36. 시설물(가구 포함)을 무단으로 위치 변경한 자 37. 원내에서 음식 섭취 후 처리가 불량한 자(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혼합 등) 38. 소등하지 아니하거나 PC와 냉·난방기를 켜놓고 외출한 자 39. 이물질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변기, 세면대, 정수기 포함)	2점
40. 원생수칙 제8조제3항의 식당 이용 수칙과 제10조의 면회 절차를 위반한 자 41. 원생실 청소상태 불량 42. 그 밖의 지시사항 불이행자 [주차구역 미준수, 타 원생의 생활 방해(복도 및 비상계단에 개인 물품 방치 등), 세탁실 이외 장소 세탁 행위, 접수·납부 기간 미준수, 별점부과 확인서 기한 내(별점통지일 기준 3일까지) 미제출, 봉사활동 신청 후 무단 불참 등]	1점

별 점 감 면

- 가. 신청대상 : 원생 및 비원생 중 “마. 기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감면기준 : 2시간 활동에 1점 감함
- 다. 봉사내용 : 도식검사 및 미화활동 등
- 라. 신청방법 : 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 (수시 접수)
- 마. 기타사항 - 동일 지적사항(별점) 발생 시 당해 학년도 감면신청 불허 (주차구역 미준수는 제외)
- 누적별점 10점 이상의 경우 감면신청 불허

[별표 3] 원내 전기기기 사용 범위

구 분	종 류	비 고
사용 가능	컴퓨터, 프린터, 스탠드, 충전기, 드라이기, 선풍기, 가습기, 청소기	* 공기청정기 : 1인당 1대 가능, 호실별 소비전력 최대 40W까지 허용 (콘도형은 최대 70W까지 허용) - 대수 초과 및 기준치 초과 시 사용 불가, 무단 사용 적발 시 별점 4점 부과 * 미사용 시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할 것 (등록 스티커가 있는 경우라도 콘센트를 꽂은 상태로 방치 시 별점 5점 부과)
사용등록 후 사용 가능	고데기, 공기청정기 (행정실에서 사용신청서 작성 후 사용 가능) ⇒ 입사시 등록(매년 재등록) (등록 후 발급받은 스티커 훼손 또는 기계 변경 시 재등록)	
반입금지 물품	전자 제품	사용 가능 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 일체
	전열 기기	드라이기를 제외한 모든 전열기기 일체 (전기장판, 온수매트, 온풍기, 히터, 전기난로, 캔들, 캔들워머, 다리미 등)
	화재 위험물 일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및 관련 배터리 일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일회용 라이터를 제외한 모든 라이터(가스 충전 등), 성냥, 인화성물질 일체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등 인화성 액체 등)
	취사 기기 일체	전기밥솥, 전기포트, 계란찜기, 냉장고, 가스버너, 오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등 ※ 취사가 가능한 콘도형 원실의 경우,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기기 또는 전열기기는 사전에 행정실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기타	주류 일체 (빈 병 또는 빈 캔 포함), 위험물 일체 (폭발물, 과도 포함 도검류 등)

※ 이외 분원장이 판단하기에 공동생활에 부적합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발열·화재 우려가 있는 품목 일체 금지
 ※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행정실 사전 문의

[별표 4] 식비 환불 기준표

구 분	조 건	증빙서류	환불 신청 기간
공적인 사유	본교 수업 및 현장실습, 멘토링 등 교내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내기관(학과, 학생처, 현장실습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	환불 사유 발생 시작일 기준 7일 전 까지 사전 신청 ※ 환불 사유 발생 시작일 기준 1일 전까지 사전 신청 인정하는 경우 : - 가족 및 친족의 사망 및 본인 입원의 경우 - 환불 사유 발생일이 개원일 (신청한 입사일) 기준 7일 이내인 경우 - 대학생활원 분원장이 환불사유로 인정한 경우
수업시간과 식사시간이 겹치는 경우	수업시간과 생활원에서 정한 식사 시간 사이 공강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 부산캠퍼스 수업인 경우 공강시간이 1시간30분 이하인 경우(왕복3시간)	확정시간표 (학생지원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개인 시간표 - 학번, 성명 표기)	
질병 및 입원	본인의 질병으로 식사가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입원한 경우	- 진단서: 정확한 병명 기재 - 의사소견서: 일반식이 불가능하다는 소견과 불가능한 기간 기재 - 입원확인서: 입원기간 명시	
가족 사망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자녀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증명서	

※ 증빙서류가 활동기간 이후 발급되는 경우, 사전에 환불 신청 후 활동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신청기간은 기준과 동일)
 ※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실 사전 문의
 ※ 개원종료 7일전부터 신청불가 (질병, 입원, 가족사망 제외)